

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751
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15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0년 9월 3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,
-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,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법인(단체)에 민간

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제8호 및 제45조(설치 및 기능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 필요성

- 직장맘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인노무사, 노동변호사 등 전문인력의 심층상담과 분쟁해결 관련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

다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전반

○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
○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
-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-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: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
- 개소일자 : 2012. 4. 1.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(자양동)
- 규 모 : 면적 122m²(1층)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1.1.1. ~ 2023.12.31.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: 금754백만원('21년 예산)

○ 인건비 561백만원, 운영비 94백만원, 사업비 99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권고)

○ 2020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2020.5.8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18조 및 제45조 등

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8.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

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"직장맘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3.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
- 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6조(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7조(지도·점검 등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·점검 등을 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9호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3.18, 2009.7.30, 2014.5.14>

- 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민간위탁 예산안 제출

※ 예산은 예산편성(심의)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함)¹⁾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²⁾을 추진하고자,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 -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
-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 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9. 3. 28.>
 - 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-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 -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는 여성의 모성권리 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2012년 전국 최초로 설립³⁾되었으며, 임금노동과 가사·양육노동의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해결 지원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45조⁴⁾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시설임.
- 이후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한 근거리 밀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여, 2016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(은평구 소재), 2017년에는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(금천구 소재)를 추가 설치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.
- 센터의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.

3) 최초 설립시 “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” 라는 명칭으로 마포구에 개소하였다가, 공간 협소 및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2014년 광진구로 이전하였고, 2019년 3월 “서울특별시 3·8 여성종합대책”에 따라 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”로 명칭이 변경되었음.

4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“직장맘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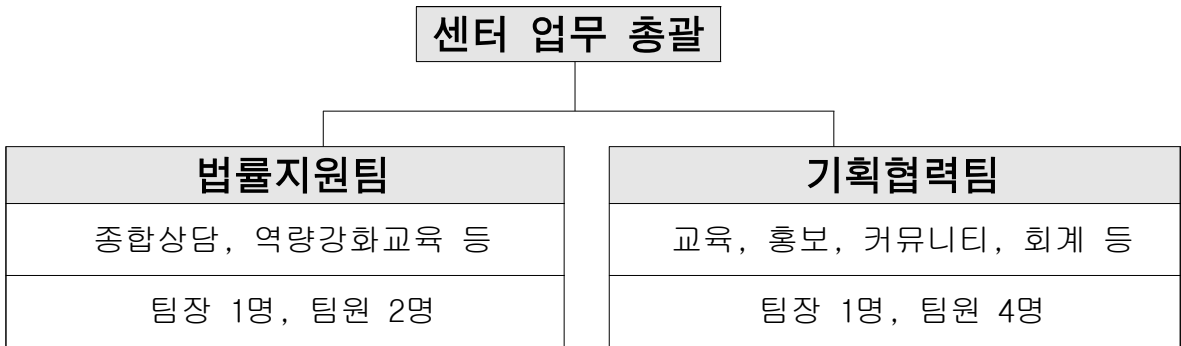
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3.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>

소재지	면적(m ²)	연간사업비 (천원)	위탁기간	운영주체
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(자양동 9-13)	122 (약 37평)	672,783	'19.1.1~'20.12.31. (개조일: '12.4.1)	(사)노동희망 (대표 김장민)

(단위 : 명)

계	센터장	팀 장	직 원
9	1	2	6



구분	업무 실적												
	성평등 종합상담				직장맘 114 정보제공	역량 강화 사업	직장맘 생태계 지원사업	홍 보					
	소계	직장내 고충	가족 관계의 고충	개인적 고충				홈페이지 (방문자수)	블로그/ 페이스북등 (방문자수)	언론·보도 (보도횟수)	캠페인 및 행사참여 (참여자수)	뉴스레터 (수령자수)	온오프라인 홍보물제작 (건수)
합 계	22,312	17,849	3,746	717	10,482	5,599	938	222,969	580,790	1,134	73,537	113,781	113,220
'15년	2,631	2,352	148	131	-	363	117	51,465	184,556	315	20,650	16,214	23,170
'16년	5,880	4,359	1,347	174	-	1,127	90	47,803	128,782	334	8,150	16,009	38,900
'17년	5,004	3,929	939	136	-	2,432	66	41,631	100,966	270	9,421	18,609	4,169
'18년	4,950	3,519	1,225	206	-	719	100	46,084	87,309	78	4,483	19,160	3,650
'19년	3,847	3,690	87	70	10,482	958	565	35,986	79,177	137	30,833	43,789	43,331

<민간위탁 추진 현황>

회차	위탁기간	선정방식	위탁기관
1 (최초)	'12. 4. 1. ~ '13. 3.31.(1년)	신규위탁 (공모)	(사)서울여성노동자회
2	'13. 4. 1. ~ '15.12.31.(2년)	재위탁 (공모)	(사)서울여성노동자회
3	'16. 1. 1. ~ '18.12.31.(3년)	재위탁 (공모)	(사)서울여성노동자회
4	'19. 1. 1. ~ '20.12.31.(2년)	재위탁 (공모)	(사)노동희망

- 한편 2020년 제2회 종합성과평과에서 같은 시기 평가를 받은 전체 22개 사무의 평균 80.1점에 비해 센터의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84점을 기록하였으나, 권역센터로서 지역밀착형센터로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개선요청사항으로 나타났음⁵⁾.

<2020년 종합성과평과 주요내용>

주요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주기적 회의 통한 예산 집행 상황 점검 및 주요사항 공유를 통해 예산집행 철저 ▸ 전 직원 대상 교육,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대한 안내·상담 등을 통해 사업장 인식 개선 노력 추진
개선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MOU 체결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확대 방안 마련 필요 ▸ 임원 업무추진비 등 활용 가능한 영역에 대한 제로페이 도입 방안 모색 필요

5) 서울특별시(2020.6), “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과 -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”, pp. 7~8.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 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⁶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^{제45조}⁷⁾에 따라 시장의 명의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.
- 「민간위탁조례」^{제4조}⁸⁾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

-
- 6) 「지방자치법」^{제104조}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7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^{제45조}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“직장맘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 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 3.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 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8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^{제4조}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삭제

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
- 직장맘들이 겪는 고충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3 종합 검토 의견

- 동 위탁 사무는 직장맘상담 및 역량 강화, 임신·출산·육아기 직장맘의 모성보호,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.
- 이에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.
- 다만, 고용노동부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서울/서초고용센터,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(16개), 「서울특별시 일·생활 균형 지원 조례」에 따른 “일생활균형지원센터”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장맘센터만의 전문적인 특화사업 시행과 함께, 직장맘들의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임.

<붙임>

직장맘지원센터별 운영 현황(2020)

구분	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	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	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
시설현황	광진구 아차산로 30길36, 동부여성발전센터 내 1층	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, 가산W센터 312호	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내 미래청 301호
위치(권역)	동남권	서남권	서북권
규모	122m ²	125m ²	94.67m ²
주요시설	사무실 및 상담실 (동부발전센터 내 교육장 활용)	사무실 및 상담실	사무실 및 상담실 (혁신파크 내 교육장, 회의실 등 활용)
주요기능 (특화기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 ◦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◦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◦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◦ 서울 동부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사업 등을 중점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 ◦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◦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◦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◦ '20년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에 입주하여 노무상담 및 역량강화 등 사업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 ◦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◦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◦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◦ 혁신파크 공간에서의 주거밀착지역 자조모임 지원과 마포지역 중심 노무상담 강화 추진
개관일	2012.4.1.	2016.7.20	2017.11.24.
위탁현황	'19. 1.1.~ '20.12.31.(2년) (사)노동희망	'18. 5. 8.~ '21. 4.30.(3년) 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	'19. 9.15~ '22. 9.14.(3년) (사)노동희망
인력	총 9명 (센터장1, 팀장2, 직원 6)	총 7명 (센터장1, 팀장2, 직원4)	총 7명 (센터장1, 팀장2, 팀원4)
2020년 예산	689백만원	572백만원	566백만원 ※ 민간위탁사업비 30백만원 별도
운영실적 ('20.7월말)	- 종합상담 2,791건 - 노동법률교육 등 역량강화 428명	- 종합상담 4,862건 - 노동법률교육 등 역량강화 62명	- 종합상담 2,379건 - 노동법률교육 등 역량강화 317명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5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,
- 나.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노하우,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법인(단체)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제8호 및 제45조(설치 및 기능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- 추진 필요성
 - 직장맘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인노무사, 노동변호사 등 전문

인력의 심층상담과 분쟁해결 관련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

다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전반

-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-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-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-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
- 개소일자 : 2012. 4. 1.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(자양동)
- 시설규모 : 면적 122㎡(1층)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1.1.1. ~ 2023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: 금754백만원('21년 예산)

- 인건비 561백만원, 운영비 94백만원, 사업비 99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권고)

- 2020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2020.5.8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45조 등

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8.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

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"직장맘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3.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6조(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7조(지도·점검 등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·점검 등을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민간위탁 예산안 제출

※ 예산은 예산편성(심의)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김수현 (☎2133-5022)